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53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오세희·박홍근·채현일

박해철 • 김 현 • 주철현

이기헌 • 박희승 • 강준현

김태선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가 대거 진출해 중소유통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중소유통업체를 대표할 뿐 그 외 골목

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입주업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3항 신설등).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지역중소유통기업"을 "지역중소유통기업, 지역소상 공인 및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협의회의"를 "그 밖에 협의회의"로 한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 기업의 대표 3명
- 2.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 경우 2명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또는 지역상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 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또는 지역상권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 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 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 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 -----지역중소유통기업. 지 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 역소상공인 및 지역-----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 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 <신 설> 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협의 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자치 <신 설> 시 · 시 · 군 · 구의 부시장 · 부 군수·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 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 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 경우 2명은 해 당 지역의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 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 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u>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u> <u>또는 주민단체를 대표하는</u> 사람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

 야 또는 지역상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 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유 통산업분야 또는 지역상권 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사람
-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 장급 공무원
- <u>④</u> 그 밖에 협의회의-----

-----.

② <u>협의회의</u>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